

#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10. 8

시민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9. 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9. 9. 9.
- 다. 상정일자 : 제6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99. 10. 8)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채진묵 청소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의무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제3조)

- 납부의무자의 납부계획서 제출에 따른 납부계획서상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납부계획서 제출시기를 개발사업 착공전까지로 규정함(안 제4조)
- 납부의무자의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산정기준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6월 30일,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5조)
- 납부금액의 고지서 작성내용을 정하고, 납부고지서 발부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소요비용의 산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비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위 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용으로 사용토록 하되,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국장 4명, 구의회의원 2명, 외부인사 2명으로, 간사는 청소행정과장,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9조)

-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비치하여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정리토록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마포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914호) 제6조 및 동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9호) 제4조에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골자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납부의무자의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산정기준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하고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였음.

-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소요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비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용도로 사용토록 하되, 다른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동 조례(안) 중 입법체계상 수정할 부분을 보면, "제1장 총칙"을 제명 다음으로 하고,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하며, 제4조 제2항 중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는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 별표4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4조제2항제5호 나.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제1항"은 "제2항"으로 하며, 제17조제3항 중 "개최"는 "개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제23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는 지방자치법(1999. 8. 31 법률 제6002호) 부칙 제3항의 개정예 따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하고,  
제24조제1항 중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67호) 제156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으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10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30만평이상을 말하는데 30만평이하는 어떻게 처리하고, 비용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와 타구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 답변요지(채진욱 청소행정과장) : 30만평이하는 기존방식으로 처리하며, 비용산정은 부지비용과 건설비용으로 구분되는데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 산정은 산정된 금액을 소각시설은 200톤/일, 사료화·퇴비화 시설은 30톤/일로 나누는가에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폐기물 발생 예정량을 곱한 금액이고, 시설 설치 소요비용의 산정은 총비용을 소각시설은 200톤/일, 사료화·퇴비화 시설은 30톤/일로 나누는가에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폐기물 발생예정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은 타구와 협의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음.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구청공무원으로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 처리에 있어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안대로 처리될 소지가 많으므로 외부위원을 늘리는 것은 어떨지?

- 답변요지(채진묵 청소행정과장) : 외부위원을 늘리는 것보다 외부위원의 경우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 관계로 국장의 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여서 국장수와 외부위원수를 동수로 하겠음.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가?
- 답변요지(채진묵 청소행정과장) : 외부위원(구의원 2명, 전문가 2명) 4명에 대하여서만 수당을 지급함.
- 질의요지(윤정용 위원) : 이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30만평이상의 부지가 마포구 관내에 있는지?
- 답변요지(채진묵 청소행정과장) : 상암택지개발지구가 해당함.

##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9. 10. 8. 이천규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조 다음의 "제1장 총칙"을 제명 다음으로 함.
-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약칭을 함.
- 안 제4조 제2항 중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는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로 함.
- 안 제4조제2항제5호 나.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함.
- 안 제8조제3항 중 "제1항"은 "제2항"으로 함.
- 안 제14조제4항 제1호 중 "4명"을 "3명"으로 함.

- 안 제17조제3항 중 "개최"는 "개의"로 함.
- 안 제23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함.
- 안 제24조제1항 중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은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9. 10. 8.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동 조례(안) 중 입법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조 다음의 "제1장 총칙"을 제명 다음으로 함.
-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약칭을 함.
- 안 제4조 제2항 중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인·허가서"는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로 함.
- 안 제4조제2항제5호 나.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함.
- 안 제8조제3항 중 "제1항"은 "제2항"으로 함.
- 안 제14조제4항 제1호 중 "4명"을 "3명"으로 함.
- 안 제17조제3항 중 "개최"는 "개의"로 함.
- 안 제23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함.
- 안 제24조제1항 중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은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으로 함.



##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다음의 "제1장 총칙"을 제명 다음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인·허가  
서"는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5호 나.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제1항"은 "제2항"으로 한다.

안 제14조제4항제1호 중 "4명"을 "3명"으로 한다.

안 제17조제3항 중 "개최"는 "개회"로 한다.

안 제23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한다.

안 제24조제1항 중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은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  
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 표

원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 칙</b></p> <p>제1조(목적) _____  _____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_____</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ol>	<p>제2조(정의)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안과 같음)</li> <li>2. (원안과 같음)</li> </ol>
<p>제4조(납부계획서 제출)</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생략)</li> <li>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생략)</li> <li>나. 사업장폐기물 <p style="margin-left: 20px;">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별 발생예정량</p> </li> </ol> </li> </ol>	<p>제4조(납부계획서 제출)</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_____,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원안과 같음)</li> <li>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원안과 같음)</li> <li>나. 사업장폐기물 <p style="margin-left: 20px;">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별 발생예정량</p> </li> </ol> </li> </ol>

원 안	수 정 안
<p>제8조(시설부지대입 소요비용의 산정)</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소요비용 산정은 제1항에서 산정된 금액을 소각시설은 200톤/일, 사료화·퇴비화 시설은 30톤/일로 나누고(톤당 부지비용)에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폐기물발생예정량(연간 일평균 기준, 톤/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8조(시설부지대입 소요비용의 산정)</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_____ 제2항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④ (원안과 같음)</p>
<p>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구 본청의 국장 4명</p> <p>2. - 3. (생략)</p> <p>⑤ - ⑥ (생략)</p>	<p>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 - ③ (원안과 같음)</p> <p>④ _____</p> <p>_____</p> <p>1. _____ 3명</p> <p>2. - 3. (원안과 같음)</p> <p>⑤ - ⑥ (원안과 같음)</p>
<p>제17조(회의)</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7조(회의)</p> <p>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_____</p> <p>_____ 개의 _____</p>
<p>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_____</p> <p>_____ , 출납폐쇄후 80일이내 _____</p> <p>_____</p> <p>② (원안과 같음)</p>
<p>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p> <p>② (생략)</p>	<p>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_____</p> <p>_____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 재산·물품의 관리·처분 _____</p> <p>_____</p> <p>②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8.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의무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규정함(안 제2조 제2호, 제3조)
- 나. 납부의무자의 납부계획서 제출에 따른 납부계획서상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납부계획서 제출시기를 개발사업 착공전까지로 규정함(안 제4조)
- 다. 납부의무자의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산정기준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6월30일,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정함(안 제5조)

- 라. 납부금액의 고지서 작성내용을 정하고, 납부고지서 발부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
- 바.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소요비용의 산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비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아. 위 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용으로 사용토록 하되,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 자.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국장 4명, 구의회 의원 2명, 외부인사 2명으로 하고, 간사는 청소행정과장,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9조)
- 차.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비치하여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 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정리토록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 파.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마포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 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

### 3.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법률 제5914호 99.2.8)제6조
-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459호 99.6.30)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 칙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 제2장 납부계획서 제출 등

제4조 (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공

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가. 생활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사료화·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나.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 제3장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제5조 (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제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 및 제9조 규정 등에 의거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6월30일,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고지 등) ①구청장은 부과액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부과액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 등) 가산금, 증가산금, 체납처분 등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4장 납부금액의 산정

제8조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①납부금액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있어 시설부지 소요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은 1일 200톤 처리용량 기준으로 하여 10,667㎡
2. 사료화·퇴비화 시설은 1일 30톤 처리용량 기준으로 하여 2,733㎡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 소요면적에 대한 부지매입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확보한 부지의 경우는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2. 부지 매입이 진행중인 경우는 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지구 평균지가에 소요면적을 곱한 금액

③소요비용 산정은 제1항에서 산정된 금액을 소각시설은 200톤/일, 사료화·퇴비화 시설은 30톤/일로 나눈 값(톤당 부지비용)에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폐기물 발생 예정량(연간 일평균 기준, 톤/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감정평가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①납부금액의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있어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비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비를 포함한다.

②소요비용의 산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법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설 건설 실적이 있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③원가계산 및 견적에 적용하는 시설기준은 별표1내지3에 의하며, 시설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구청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소요비용 산정은 제1항에서 산정한 총비용을 소각시설은 200톤/일, 사료화·퇴비화 시설은 30톤/일(톤당 시설비용)로 나눈 값에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폐기물 발생 예정량(연간 일평균 기준, 톤/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원가계산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5장 기금의 설치 등

제10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2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의 국장 4명

2. 마포구의회 의원 2명

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2명

⑤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 (회의록 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19조 (간사 등) ①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

당주사가 된다.

제20조 (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각시설 설치기준(200톤/일 처리기준)—제9조 제3항 관련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반 입 공 급설비	쓰레기 계량설비 쓰레기및대형쓰레기 투입문 쓰레기 크레인 대형쓰레기 파쇄기 쓰레기 반입장 및 진출입문 쓰레기 피트 전기 계장설비 및 기타	-쓰레기 피트는 3일이상 저장용량 -쓰레기 계량설비, 크레인은 2기 이상			
소각설비	소각로 보조버너 침출수 분사설비 쓰레기 공급 이송설비 유압장치 전기 계장설비 및 기타	-1일 200톤 처리 -강열감량 7%이내 -설계범위 1,200kcal/kg ~ 2,500kcal/kg -연소가스 출구온도 850℃이상			
연소가스 냉각설비	폐열보일러 고압 및 저압증기 복수기 응축수 처리설비 고압증기 분배설비 슈트 브로아 급수펌프, 순수 제조설비 청관제 주입시설 증기 터빈 발전기 지역난방수 열교환 시설 탈기 시설 보충수 공급시설	연소가스 배출온도 200℃이하			
연소가스 처리설비	집진설비(백필터) 반건식 반응탑 SCR 촉매시설 활성탄 흡착설비	오염물질 종 류	단 위	평 균 치	최 고 치
		분 진	mg/Sm <sup>3</sup>	10	30
		황산화물	ppm	10	70
		염화수소	ppm	10	40
		질산화물	ppm	50	200
		일산화탄소	ppm	30	80
		다이옥신	ng-TE/Sm <sup>3</sup>		0.1
기타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급 배 기 설 비	압입 송풍기 2차 공기 송풍기 유인 송풍기 덕트 배관 및 부속 전기 계장설비 및 기타 굴뚝	- 굴뚝높이 150m 이상
재 처 리 설 비	재피트 재반출 계량기 재크레인 재이송, 추출, 냉각장치	- 재피트 저장용량 5일분 이상 - 바닥재와 Fly ash 분리 저장
급 배 수 설 비	용수 저장조 및 고가탱크 급수펌프, 보충수 펌프등 기기 냉각수 순환펌프 및 냉각탑 기타 배관 및 관련 장치	- 관련법규 및 KS규정에 의함.
폐수처리 설 비	유기계 폐수처리 시설 무기계 폐수처리 시설	- 배출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준용
유틸리티	수전설비 상수도 인입 LNG인입 및 정압설비	관련법규에 의함
기타설비	압축공기 설비 구내 냉난방 설비 청소차량 전자동 세차설비 연료 저장 및 공급설비(비상발전 기용) 화재감지, 경보설비등 소방설비	
전기설비	수배전 설비 비상 발전설비 및 비상전원 옥내외 조명 설비 제어 전원 낙뢰 보호 설비 TV 공시청 설비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계장설비	분산제어 설비(DCS) 감시용 제어반 및 계기 프린터 폐쇄회로 카메라 및 모니터 기타 부대설비	- Mimic반을 갖고 있는 감시용 제어반 - 중앙 콘트롤실에서 감시, 분석, 제어, 경보 입출력 시스템 - 안전 인터록 장치
건축설비	공장동 관리동 기타 부속건물	쓰레기 처리장치럼 보이지 않도록 미려한 구조
토 목 조경설비	지반정지 구내도로 건물기초 조경설비 담장	택지개발지역의 평균지형 기준

## &lt;별표2&gt;

## 퇴비화 시설 설치기준(30톤/일 처리기준) - 제9조 제3항 관련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반입설비	음식물쓰레기 저장 호퍼 반입장 차량 진출입문 악취 흡착시설 파쇄기 선별기 컨베어 시스템	- 악취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 파쇄기는 Hammer mill 또는 Shredder - 선별기는 인력 선별기, 자력 선별 기 설치
발효설비	발효조 숙성조 가스처리 설비, 탈수조, 폐수 처 리 설비(혐기성 설비에 한함)	- 시설사양이 상이할 경우 필요설비 를 가감한다.
후 처 리 설 비	선별기 이송설비 포장설비	- 이물질 배출설비 포함
계장설비	PLC 또는 DCS 제어방식 중앙콘트롤 방식 카메라 모니터를 통한 폐쇄회로 기타 부대설비	
전기설비	수배전 설비 옥내외 조명설비 낙뢰보호 설비 기타 부대설비	
건축설비	공장동 관리동 구내 냉난방 설비 기타 부속건물	
토 목 조경설비	지반정지 구내도로 건물기초 조경설비 담장	택지개발지역 평균지형 기준



<별표3>

사료화 시설 설치기준(30톤/일 처리기준) - 제9조 제3항 관련

시 설 명	구 성 장 비	시 설 조 건
반입설비	음식물쓰레기 저장 호퍼 반입장 차량 진출입문 악취 흡착시설 파쇄기 이물질 제거설비(선별기) 컨베이어 시스템	- 악취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한다. - 파쇄기는 Hammer mill 또는 Shredder - 선별기는 인력 또는 기계식 선별 기 설치 - 재질은 내부식성 사용
발효설비	건조설비 교반시설 살균시설 발효시설 이송 콘베이어	- 건식과 습식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사양으로 한다.
후 처 리 설 비	배출시설 사료 공급시설 또는 포장설비 선별기(필요시)	
계장설비	PLC 또는 DCS 제어방식 중앙콘트롤 방식 카메라 모니터를 통한 폐쇄회로 기타 부대설비	
전기설비	수배전 설비 옥내외 조명설비 낙뢰보호 설비 기타 부대설비	
건축설비	공장동 관리동 구내 냉난방 설비 기타 부속건물	
토 목 조경설비	지반정지 구내도로 건물기초 조경설비 담장	택지개발지역 평균지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기금 관리 대장(제22조 관련)

(단위 : 원)

년월일	예금				인출			잔액
	재원	예금종류	금액	이율	기간	적요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기금 출납부(제22조 관련)

(단위 : 원)

년월일	적요	수입	지출	결재			
				담당	담당주사	과장	국장